

‘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’  
자활급여 기본계획

# 앞으로의 자활은?



자산형성

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'**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**'에 따르면,  
근로빈곤층의 독립적 자활 경로로서 사업단의 인센티브 역할을  
해온 **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제도가 곧 개편될 예정**이라고 합니다.

기존 5개 통장을 수급자와 차상위로 분류하여 2개 통장으로  
통합하고, 근로소득공제와 민간매칭금을 청년층에 지원하며,  
**추가적 인센티브를 보완할 계획**이라고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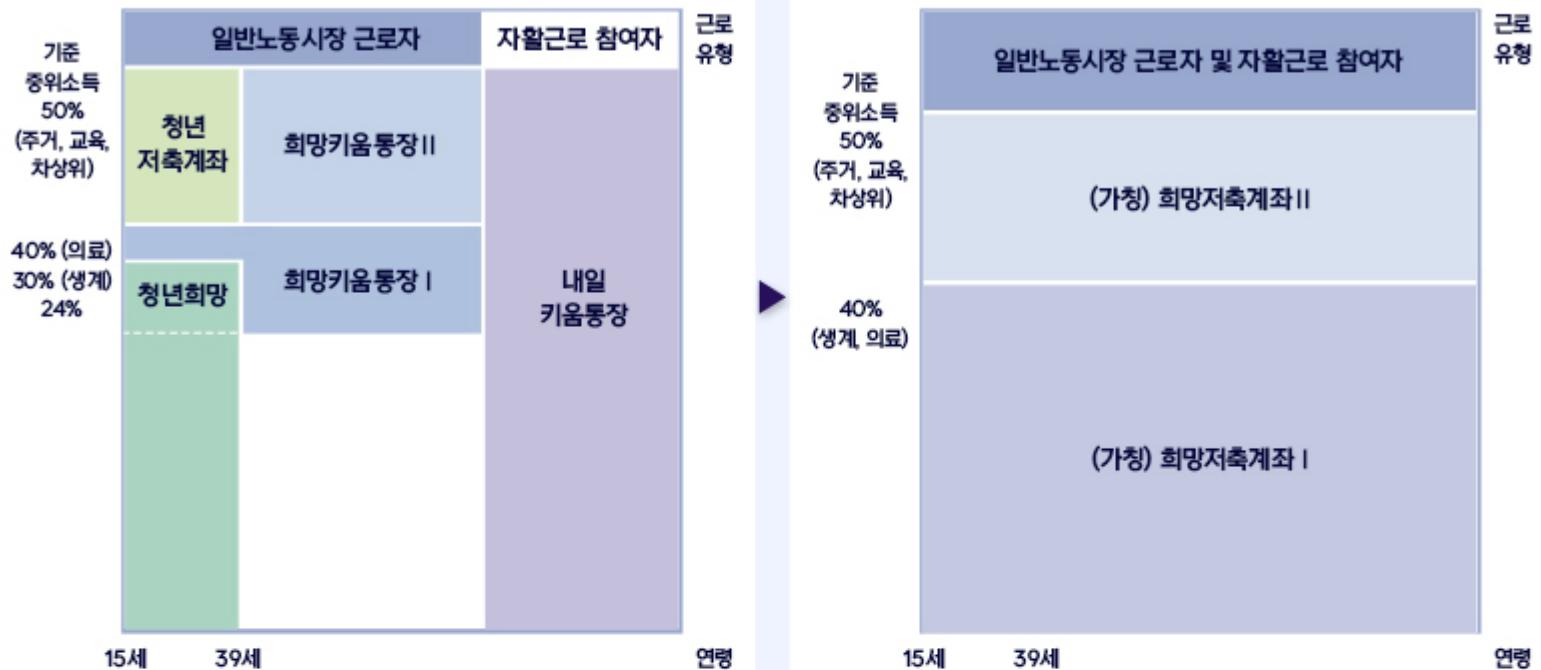


## · 자활의 독립적 경로로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개편

정책 대상과 목표를 일치시켜 목적에 맞는 지급요건을 설정하고,  
복잡한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사업 대상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의  
사업 이해도를 높여 참여자 모집을 활성화시킵니다.

## · 사업단 참여자의 근로·창업 인센티브로서의 역할 강화

-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(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) 시  
근로소득장려금 외 매출액 등에서 추가 매칭금을 지급합니다.
- 통장 3년 만기 후 해당 적립금의 50% 이상을 자활기업 창업에 사용 시,  
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추가 지급합니다.



구분	정부지원금	지급요건
희망키움통장 II	1 : 1	교육 및 사례관리
청년저축계좌	1 : 3	국가공인자격증 취득
내일키움통장	(정부지원금) 1 : 1+ (중앙자산키움펀드) 사업단 유형에 따라 1 : 0.5 또는 1 : 1+ (사업단 수익금) 평균 12만원	취 · 창업
희망키움통장 I	[기구 총 소득 - 기준중위소득의 24%] X 85%	탈수급
청년희망	청년 총 소득 X 45%	탈수급

구분	정부지원금	지급요건
[가칭] 희망저축계좌 II	1 : 3	심화사례관리
[가칭] 희망저축계좌 I		탈수급 ※탈수급이 어려운 경우 : 국민연금 추가납부 연계로 노후소득보장 검토

## ① 희망 I
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 지급
- 정부지원금의 기존 소득비례 매칭방식을 1:3(본인적립금 : 정부지원금)으로 일원화
- 기존의 탈수급 조건을 유지하되, 3년 이내 탈수급 하지 못하면  
(기존)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→ (개선) 환수 또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연계\*

\* 만기 후 탈수급 하지 못한 자가 국민연금 추가납부 선택 시,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고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에 추가액을 지급하여 가입자의 노후 탈수급 지원

## ② 희망 II
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 조정 (1:1→ 1:3), 지급요건을 탈빈곤 목적에 맞게 개선
  1. 가입 시 자립목표·계획 수립
  2. 가입 기간에 대출연계·재무상담 등 통해 계획이행 및 변경 지원
  3. 만기 이후 적립금 사용 시 1회~2회 적립금 활용 상담 등

## · 청년특화

- 근로빈곤청년(만15~39세)에게 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),

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**청년특화 교육서비스** 등 제공

→자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, 자활기업 근무 청년, 보호종료 아동 등

**기존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도모**

## 〈통장별 설계(안)〉

구분	정부지원금	지급요건	정책대상별 인센티브 (선택)
[가칭] 희망저축계좌 II		심화사례관리	민간매칭금 자활기금 지자체 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중앙자산기울펀드
[가칭] 희망저축계좌 I	1 : 3 (정률)	탈수급 또는 국민연금 추가납부	+ .

## • 평가기반 마련

- 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에 참고하기 위해 체계적 통계관리의 틀을 마련하고, 주기적 패널조사를 시행합니다.
- 사업참여부터 종료 시까지 참여자의 소득, 직업(일용직, 정규직 등), 자립 의지 등 변화를 파악합니다.
- 참여자-비참여자 비교집단 분석, 참여자 추적조사 및 탈수급 후 이력 등을 관리합니다.



**“앞으로 3년,  
더 따뜻한 사회, 더 포용적인 고용·복지 안전망을  
지향합니다.”**



**한국자활복지개발원**  
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-Sufficiency and Welfare

‘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’  
자활급여 기본계획

# 앞으로의 자활은?



자활기업

보건복지부는 ‘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’에 따라, **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기반 마련 및 기업 모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.**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**마일스톤 방식**을 도입하고, 자활기업의 창업·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및 판로지원, 성공적 기업 모델로서 광역·전국자활기업을 육성합니다.



## 마일스톤 방식

성장단계별(창업-성장-성숙) 인센티브를  
제공하여 시장진입형·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등의  
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합니다.

창업단계	성장단계	성숙단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창업자금 추가 인센티브</li> <li>-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구성 2년 이내 조기창업</li> <li>- 사업단 구성인원 100% 자활기업 전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매출규모 성장(2배) 및 일자리창출 성장(2배) 시 사업개발비 지원</li> <li>· 법인사업자 전환 시 설립비용 등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광역 또는 전국 자활기업 설립 시 필요자금 지원</li> <li>*비지니스모델 컨설팅, 시설구축 등</li> <li>· 공동브랜드 및 협업사업 지원</li> </ul>

※(지역자활센터) 전 단계에서 평가 가점 부여 등



자활기업 육성 및 지속성장 도모

## · 규제완화

- 기존 전일제로 제한된 한시적 **인건비를 시간제도 인정하는 다변화**를 추진합니다.
- 자활기업 규모별 **전문가 사용 인원**(기존 3명 제한→ 최대 5명)도 **확대**를 추진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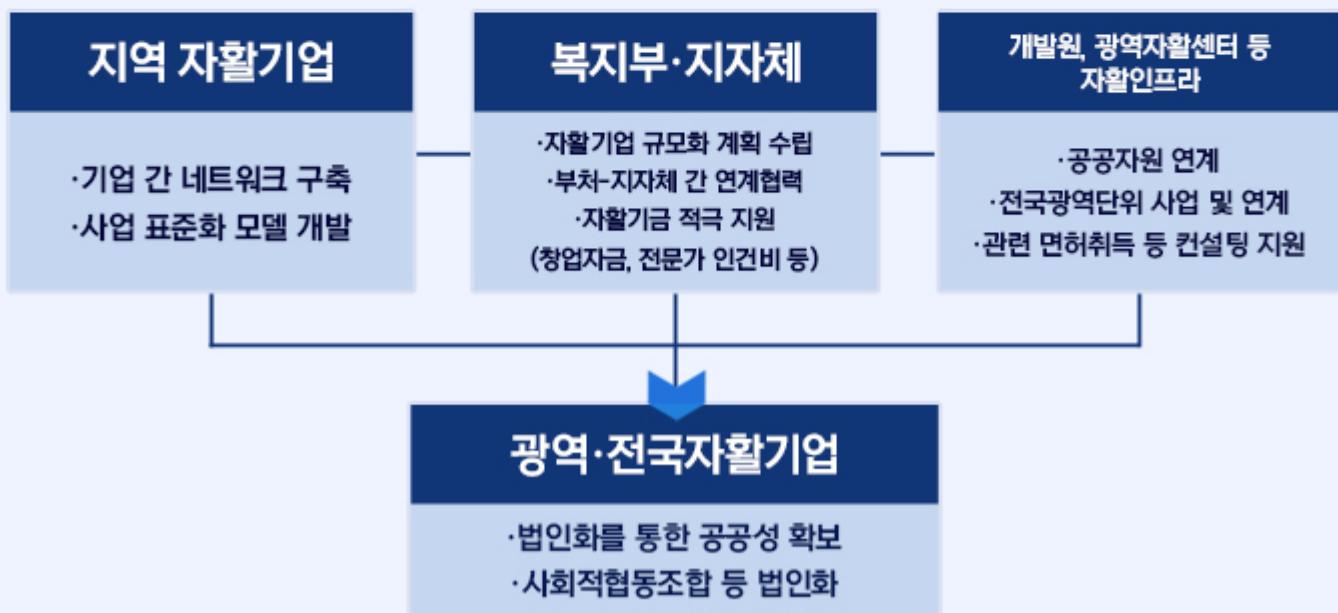
## · 판로지원

- 취약계층 주거·편의시설 개선, 소독·방역 등 **환경변화에 따라 제도화되는 공공사업 분야 등을 발굴·연계**(지역사회 통합돌봄 등) 합니다.  
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 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공공사업 관련 부처 협의 등을 추진합니다.
- **온라인 기획전·쇼핑몰 입점 지원** 등 **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**하여  
비대면화 대응에 필요한 **역량·인프라 지원을 강화**합니다.
- 기존의 우체국 쇼핑몰 및 e-store 36.5+(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)  
입점 지원 확대, **광역·전국단위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추진**합니다.

### · 성공기업 모델 마련

- 업종별 「기업추진 민-관TF」를 구성,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자활기업을 발굴하여 광역·전국자활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.  
\*지역자활기업-자활인프라(개발원·광역자활센터 등)-복지부 및 광역 공무원
- 프랜차이즈 가맹점형 자활기업과 유사·동종 업종을 연계한 네트워크형 기업 및 M&A형 기업 등을 육성합니다.

### 〈민-관 협력모델 (안)〉



### · 대표 브랜드화

- 광역·전국 단위 단일 브랜드를 위한 공모, 로고제작 지원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, 우수사례 및 품질진단·개선 등 컨설팅,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향 균일화, 주기적 평가·인증 등을 통해 지속적 품질 관리를 실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.
- 기존 프랜차이즈형 자활사업도 포스트코로나 -19시대에 맞도록 육성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이를 위하여 자활의 대표적 사업으로 방역, 청소분야의 광역, 전국자활기업을 육성합니다.



### · 제도 정비

- 자활기업의 인정·취소요건\* 등을 명확화하기 위해 **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.**

\* (예)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, 자진반납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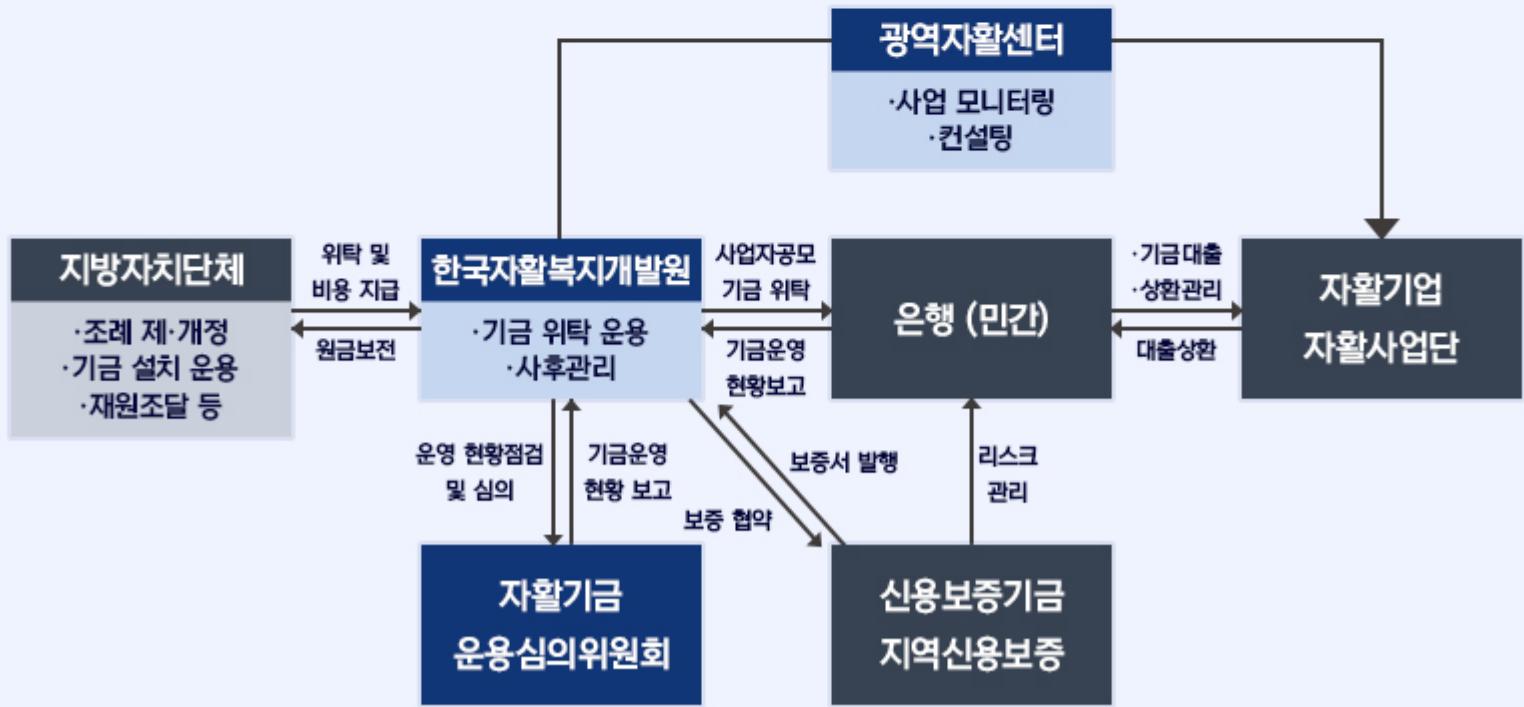
### · 통계관리 강화

- 구성원 수급유형, 한시적 인건비 등 **지원현황, 매출액 등 기업 주요 정보를 통계화\*** 합니다.  
\* (예시) 개발원(광역자활센터)-세무법인 팀이 세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액, 구성원 등 정보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모델 설계
- **투명한 기업관리로 자활기금 등 지원여건을 마련하고, 정책과 현장 간 정합성을 강화하며, 폐업 위기를 조기에 파악하여 개입 적시성을 확보합니다.**

## · 자활기금 활성화

- 지자체-개발원 간 협약으로 기금 자율위탁모델을 개발(지자체에서 위탁비용 지급), 표준조례안 마련 등 기금 집행 여건을 개선합니다.
- 중앙자산키움펀드와 매칭 등을 통해 자활기업 창업자금, 우수자활기업 등 적극 지원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거마련 추진)합니다.

### 〈자활기금 자율위탁 관리모형 (안)〉



**“앞으로 3년,  
더 따뜻한 사회, 더 포용적인 고용·복지 안전망을  
지향합니다.”**



**한국자활복지개발원**  
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-Sufficiency and Welfare

‘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’  
자활급여 기본계획

# 앞으로의 자활은?



자활근로

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적·사회적 자산(asset) 및 강점(strength)에 기반한 자립 지원을 도모하여 ‘탈수급’ 일변도의 목표로부터  
다변화하여 **사람중심 사회·고용안전망 포용적  
자활지원체계 구축**하려고 합니다.  
이를 통해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,  
**참여자 개인 삶의 변화**를 지지하겠습니다.



우선, 자활 역량이 낮은 참여자에 대한 강점·역량  
제고 자활모델 정립 및 자립지원전문서비스 강화, 대상별  
특화된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.  
즉, 개인별 자활역량에 따라  
**①자활준비형**과 **②자립도전형**으로 나누고  
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


-‘자활준비형’은 자활역량이 낮은 조건부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배양에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 
지속적으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, 개인별 강점 강화,  
사회 관계망 형성 등 인적·사회적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,  
자립계획(ISP, IAP) 이행 여부 점검(사업단 단위) 후 심층  
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전문서비스팀으로 연계하여  
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



-‘자립도전형’은 참여 욕구·자활 역량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체험, 전문적 자립경로 설계 등을 제공하여 **취·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**입니다. 자활장려금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(‘21~), 자활급여 인상 등 보상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빈곤 진입 예방 및 탈수급을 목표로 합니다. 휴·폐업 소상공인, 보호종료아동·니트청년 등 **대상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·창업 성공률도 제고합니다.**



이러한 변화를 위해 2023년까지  
자활사례관리를 고도화한 자립지원전문서비스(가칭)를  
지역 자활센터(250개소)로 확대하고,  
자활근로 참여자 7.5만명을 달성하겠습니다.



## 자활사업과 타 제도와의 연계·협력도 강화합니다.
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(미취업) 후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참여자는 자활사업단, 자활기업 등 참여를 통해 **자활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**합니다.
- 자활사업단 운영능력이 있는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**자활근로 사업위탁을 통해 참여자 취·창업 기회를 확대**합니다.
- 지역자활센터의 자립 강화, 자활기업 창출·성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**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을 더욱 활성화**합니다.

**“앞으로 3년,  
더 따뜻한 사회, 더 포용적인 고용·복지 안전망을  
지향합니다.”**



**한국자활복지개발원**  
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-Sufficiency and Welfare